

# 전문가과정 운영규정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명칭)** 본 과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개설 ○○○전문가과정(이하 “전문가과정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2.12.21.>
- 제2조(목적)** 본 전문가과정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국제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, 전문가양성을 구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소재지)** 본 전문가과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전북희망캠퍼스 내에 둔다.<개정 2012.12.21.>
- 제4조(교육과정)** 본 전문가과정에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, 직업준비교육과정, 직업재교육과정, 지역사회봉사교육과정 등을 둔다.
- 제5조(정원)** 본 전문가과정의 과정별 정원 및 교육과정은 문화예술대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- 제6조(수업)** 본 전문가과정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간,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.
- 제7조(교육장소)** 교육 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직

- 제8조(원장)** ① 본 전문가과정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(문화예술대학원장 당연직) 1명을 두며,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 
 ② 원장은 본 전문가과정을 대표하고 본 전문가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  
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 각계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9조(행정실)** 본 전문가과정의 행정실은 예원예술대학교 직제에 의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10조(위원회의 설치)** 본 전문가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은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** 위원회는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촉위원들로 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
  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 4.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전문가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13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  
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수강등록 및 납부금

- 제14조(등록 및 입학)** 본 전문가과정의 수강등록과 입학 시기는 매학기에 원장이 정한다.
- 제15조(수강자격)** 본 전문가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,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수강원서의 제출)** 본 전문가과정에 수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선발절차)** 본 전문가과정의 수강자 선발은 각 과정별로 원서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**제18조(수강등록)** ① 수강생은 등록 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납입금의 반환은 학칙 제51조 납입금 반환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수업연한, 교육과정 및 수료

**제19조(수업연한)** 본 전문가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(30주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대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21.>

**제20조(교육과정)** ① 본 전문가과정의 교육과정은 모집 학기별로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육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정한다.

**제21조(이수교과목)** 각 과정별 이수교과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1조의2(강사자격)** 강사의 자격은 대학의 전임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<조신설 2012.12.21.>

**제21조의3(강사위촉)** 전문가과정 강사위촉은 문화예술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학기단위로 한다.<조신설 2012.12.21.>

**제21조의4(제출서류)** 강사로 추천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 위촉자는 일부서류(2호,3호,4호,6호)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.<조신설 2012.12.21.>

1. 추천서 1부.
2. 이력서 1부.
3. 학력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1부
4. 경력증명서 1부.
5. 주민등록등본 1통
6. 연구실적증빙서류 1통

**제22조(수료증 및 자격인증서 수여)** ① 각 강좌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)을 수여한다.<서식변경 2012.12.21.>

② 과정개설 공인기관 및 민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.

③ 본 전문가과정에서 직접 개발·개설한 자격과정에 한하여 총장명의로 자격인증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발급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**제23조(수료증명서 발급)** 각 강좌별 수료자는 수료증명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<서식변경 2012.12.21.>

## 제6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

**제24조(수강생 지도)** 본 전문가과정의 수강생은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(포상)** 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

있다.<개정 2012.12.21.>

**제26조(징계)** 원장은 교육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21.>

**제27조(특전)** 교육생에게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21.>

1. 도서관 이용 및 열람
2. 취업지원실 이용
3. 원우회, 동아리 결성 및 활동지원

**제28조(장학금)** ① 본 전문가과정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한 자 및 전문가과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<개정 2012.12.21.>

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수강신청일로부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③ 장학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이 많은 쪽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한다.

## 제7장 공개강좌

**제29조(공개강좌)** ① 본 전문가과정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 제8장 재정

**제30조(회계)** 본 전문가과정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하며, 별도 재정으로 관리한다.

**제31조(예산승인)** 원장은 본 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2조(수입원)** 본 전문가과정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자의 학습료
2. 개인이나 단체의 보조금
3. 위탁교육 지원금(위탁교육시)
4. 기타 수입

**제33조(결산보고)** 원장은 사업 수행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보칙

**제34조(준용규정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**제35조(운영내규)**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7. 3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제	호
<b>수 료 증</b>	
성 명 : 생년월일 : 19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○○○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	
년    월    일	
<b>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학위 ○○○ (인)</b>	
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	
년    월    일	
<b>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○○○ (인)</b>	

(별지 제2호 서식)

제 호

수료증명서

성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과정 : 문화예술대학원 ○○○전문가과정

위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 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 
○○○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원장